## 식민지통치시기 전매제도를 통한 일제의 략탈책동과 그 악랄성

박 화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소금과 같은 식료품에 대해서까지 전매제도를 실시하여 조선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제5권 248폐지)

일반적으로 전매제도란 착취사회에서 국가나 특정한 단체가 해당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생산자들을 직접적으로 착취하 며 생산된 물품의 판매권을 독차지하는 《관영》적인 독점기업제도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일제가 실시한 전매제 도는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대 중적이고 기초적인 생산물과 희귀한 약 재원료를 대상으로 한것으로 하여 식민 지재정수입의 중요한 원천으로 되였으 며 조선인민의 초보적인 생존권까지 롱 락한 가장 악랄한 식민지략탈제도의 하 나였다.

일제는 이미 조선강점이전에 우리 나라에 식민지적인 전매제도를 내오기 위하여 조선봉건왕조에 전매기구를 조작하고 전국적인 전매체계의 수립에 미쳐날뛰였으며 강점이후 《통감통치》시기에는 그것을 더욱 정비하여 식민지전매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일제는 1899년에 조선봉건정부의 내장원에 첫 전매기구인 《삼정과》를 설치하고 인삼의 생산, 가공, 판매에 대한독점을 실시하였으며 1905년 재정고문부의 출현을 계기로 담배에 대한 자원조사와 국가적인 담배재배 및 판매제를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전매제의 토대를 마련한데 기초하여 일제는 《통감부》 농상공무부 에 상설적인 기구로서 전매파를 설치하 고 당시까지의 전매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장악통제하였다.

특히 일제는 1910년 합병조약을 날조한 후 종전의 《통감부》 전매과를 《총독부》 탁지부 전매과로 개편하였으며 1921년 7월 《총독부》 직속기구로서 전매국을 내오고 그를 통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때부터 일제는 《총독부》전매국을 통하여 가장 필수적이고 일반화된 소비 품인 담배, 소금, 인삼, 아편을 전매품 으로 공식규정하고 그를 통한 략탈을 악 랄하게 감행하였다.

무엇보다먼저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담 배전매기구를 조작하고 그를 통한 착취 를 강화하였다.

일제는 우선 담배전매기구를 조작하기 위해 이미 1903년에 한성(서울)에 연초상회를, 1909년에는 동아연초주식회사를, 1911년에는 조선연초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 그를 통한 략탈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담배를 통한 식민지적수탈을 목적으로 1914년부터 제조담배소비세를 적용실시하였고 1918년부터는 잎담배소 비세를 부과하여 자체로 잎담배를 심어 소비하던 농민들까지도 착취하였다.

일제가 전매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던 1920년대초기 우리 나라에는 일 본인자본가가 경영하는 담배회사, 공장이 연초상회, 조선연초주식회사외에도 16개나 되였으며 그가운데서도 동아연 초주식회사는 2 000여명의 조선인로동 자들을 고용하는 대규모적인 담배회사 로서 그 생산량은 전체 담배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었다. 일제는 저들이 직접 담배의 생산 및 판매를 독점하고 폭리를 얻기 위하여 1921년 4월 1일 《조선연초전매령》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그 담당기구로서 전매국을 설치하였다.

일제는 전매제도실시후 잎담배는 허가된 농민들만 재배할수 있게 하고 생산된 담배잎을 모두 전매국에 바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전국에 16개의 잎담배수납관서와 그밑에 70여개의 잎담배수납취급소를 설치하였다.

일제는 잎담배략탈을 위하여 담배경 작조합을 비롯한 수십개의 어용조합을 내 오고 여기에 13만 3 000여명의 농민들 을 강제적으로 끌어들였으며 27만원에 달하는 대부금까지 투자하였다.

일제는 잎담배수탙뿐아니라 담배의 가 공 및 판매도 완전히 독점하였다.

일제는 한성(서울), 대구, 평양, 전주에 《총독부》전매국직속의 담배공장들을 건설하고 여기서 농민들로부터 략탈한 잎담배로 여러가지 가공품을 생산하였다.

일제는 또한 관제적인 담배판매망체계를 확대하며 더 많은 담배판매리익을 독점하기 위하여 그 판매체계를 여러차례 개편하였다.

일제는 담배전매령을 공포한 초시기에는 담배를 한성(서울), 대구, 평양, 전주의 4개 전매지국 및 청주를 비롯한 23개의 전매지청에서 지역내의 도매상인들에게 넘겨주어 팔게 하였다. 그러나 1928년부터는 《조선총독부》가 주주로되는 새로운 관제회사인 조선담배전매주식회사를 조작하고 그밑에 24개의 지점, 334개의 영업소, 6만 446개의 소매망을 내오고 그 지점들이 4개의 전매지국 및 20개의 전매지국출장소와의 련계밑에 담배를 넘겨받게 하였다.

일제는 1931년 7월부터 담배판매체

계를 완전히 직영으로 재편성하였다. 그리하여 4개의 전매지국과 22개의 출장소의 직접적인 감독밑에 335개의 판매소를 설치함으로써 《조선총독부》가 직접 담배판매를 틀어쥐는 체계를 완비하였다.

일제는 그후 담배제품의 판매가 도시와 산업지대에 한정되여있고 산간오지에는 판매망이 전혀 없는 분포상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분포조사를 진행하고 판매망을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산간오지는 물론 작은 섬에까지 사람들이 살고있는 모든 곳에 소매촉수를 뻗치였다.

그리하여 1936년말 현재 담배소매점 은 5만 8 110개로 늘어났고 한해 담배 매상고는 4 785만 5 834원에 달하였다.

한편 일제는 담배를 통한 무역도 독점하고 그를 통해서도 막대한 리윤을 짜 내였다.

일제는 1926년 한해에만도 16만 2 049원에 해당하는 일본 및 외국가공담 배를 수입하여 추가된 독점가격으로 판 매하였으며 1930년에는 122만 5 000 원어치의 담배를 수출하고 235만 3 000 원어치의 잎담배를 수입하여 원료로 사 용함으로써 막대한 상업적리윤을 획득 하였다.

다음으로 일제는 소금, 인삼 및 아편 전매제도를 조작하고 그를 통한 착취도 강화하였다.

일제는 담배와 함께 소금과 인삼, 아편에 대해서도 그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으며 해당 전매기구를 조작하고 가혹한 략탈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소금을 통한 착취를 위하여 소금발을 늘이는것을 기본문제로 보고 1912년말까지 광량만에 934정보, 주안에 909정보의 소금밭을 건설하였으며

1917년부터 그 확장공사에 착수하여 다음해 말까지 주안에 139정보, 1919년 까지는 광량만에 105정보를 더 확장하였고 1920년에는 다시 광량만 덕동에 118정보를 더 확장하여 《총독부》 직영소금발 총면적을 1 395정보로 늘이였다.

1920년이후에는 소금받을 경기도 남동에 300정보, 군사면에 575정보, 평안도 귀성에 149정보, 평북도 남시에 217정보를 확장하여 총면적 2 446정보로 넓히였다.

이러한 책동에 기초하여 일제는 1920 년대에 들어서면서 소금에 대한 전매제 도를 실시하고 우리 나라의 제염업을 완 전히 독점하였다.

일제는 소금의 생산뿐아니라 전조선 적인 판매망을 조직하고 그 판매도 독 점하였다.

일제는 처음 전매국 소금위탁판매원 으로 하여금 전국의 75명의 소금위탁도 매상들에게 《총독부》가 제정한 도매가 격으로 소금을 넘기도록 하였으며 도매 상은 다시 지정위탁소매상에게 소금을 넘 겨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위탁판매인은 포장한 소금가격에서 판매가격의 4%에 해당한 금액을 판매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떼냈으며 포장하지 않은 소금을 넘길 때에는 운반방법에 따라 판매가격의 10%를 뗴내였다.

일제는 그후 도매상과 소매상을 포함 한 《위탁판매인제도》에 의한 소금판 매가 소비자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하는 데서 불합리하다는것을 리유로 그것을 《전매국직영판매제》로 넘겼다.

일제는 신의주, 남포, 인천, 군산, 목 포, 부산, 원산, 청진에 각각 소금전매 지국을 설치하고 전매국관리들을 각 지 국에 주재시켜 소금특약판매점을 개설 하고 소금의 전매를 진행하였다.

일제는 인삼에 대한 독점권을 장악하

기 위해서도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이미 1900년에 미쯔이물산회사로 하여금 조선봉건정부와 인삼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중국에 대한 인삼수출을 독점하였으며 1908년 7월에는 괴뢰내각을 사촉하여 《홍삼전매법》을 공포하고 그 실권을 저들의 수중에 완전히장악하였다. 일제는 《홍삼전매법》과 그시행규칙을 통하여 홍삼제조업은 정부의전속으로서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자가 아니면 그것을 가공, 판매, 수출할수 없으며 인삼은 정부의 면허를 받은자가 아니면 경작, 재배하지 못하며 그를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현물을 몰수한다고 규정하였다.

일제는 인삼에 대한 독점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인삼특별경작구역도 설정하였다. 제1차(1908년 7월)로는 개성, 장연, 풍덕, 금천, 우산, 평산, 서흥, 봉산의 8개군에, 제2차(1913년 8월)로 수안, 황주, 중화의 3개군에 경작구역을 설치하여 그 수를 11개 군으로 하였다. 그후 1927년에 수안군과 중화군을 제외하고 1930년 10월에는 최종적으로 개성, 장풍, 장단, 금천, 서흥, 봉산의 경다.

일제는 인삼포경영을 봉건적인 소작 제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삼포지주는 알곡생산지주와는 달리 수 확물에 대한 처분을 할수 없었으며 그 것은 철저히 《조선총독부》전매국이 장 악하였다.

일제가 삼포경영을 봉건적인 소작제 방법으로 진행한것은 인삼생산이 다른 농 산물생산과는 달리 오랜 숙련과 경험을 요구하였기때문이다. 결국 인삼포지주는 표면상의 지주였고 실제적지주는 《총 독부》전매국이였다.

일제는 1920년 10월부터 인삼전매제

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농민들의 로 동에 의하여 생산된 인삼전량을 강탈하 였다.

인삼전매제 실시이후 《조선총독부》 전매국은 미쯔이물산회사만을 기본대상 으로 하여 전매가격으로 인삼을 넘겨주 었으며 이 회사는 그것을 주로 외국에 수 출하여 막대한 폭리를 얻었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인삼에 대한 전매 권을 독차지하고 그를 상품화하여 막대 한 화폐자본을 축적하였다.

일제는 또한 아편에 대해서도 식민지 전매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아편의 재배와 략탈을 위한 책동을 본격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아편재배는 일반 농작물에 비하여 훨씬 유리하다. 그러므로 아편을 재배하는것은 …특별한 고려를 돌려야 할 문제이다.》 고 하면서 가장 악독한 아편전매제도를 확립하였다.

일제는 1919년 6월《제령》15호로《조 선아편취체령》 과 《조선아편취체령시 행규칙》을 조작공포하였다. 이 악법의 골 자는 첫째로 아편재배는 《조선총독부》 의 허가제로 하며 행정당국의 허가밑에 서만 학술연구 또는 관상용으로 리용할 수 있다는것, 둘째로 아편재배는 《조선 총독부》가 지정한 구역안에서만 허용 한다는것, 셋째로 허가를 받아 생산한 아 편은 그 전량을 제정된 기간안에 행정 당국에 납부하며 아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팔아준다는것이였다.

이것은 아편재배와 제조, 판매권을 《조 선총독부》가 철저히 틀어쥐고 그를 통 한 리윤획득을 노린것이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전매국이 조작 된 이후 아편의 재배지역을 경기도, 강 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하 는 북부조선의 고산지대로 지정하고 매 해 그 면적을 늘여나갔다.

그리하여 1921년에 453정보이던 아 편재배면적은 1938년에는 1만 2060정 보 즉 1921년의 26배이상으로 늘어났다.

당시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의 아편생 산 및 략탈량을 공개하지 않은것으로 하 여 실지 수량은 알수 없으나 그 량은 매 해 수십t에 달하였다.

일제는 아편재배와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을 완전히 독점하고 그것을 대륙침략전쟁과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마비의 수단으로 리용하였으며 방대한 화폐적리득을 획득하였다.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나라에서 일제가 실시한 전매제도는 그 형식과 방법, 내용에 있어서 가장 반동적이고 반인민 적인 제도였으며 그에 복무한 전매기구 들은 경제적략탈의 직접적수단이였다.

전매제도를 통한 착취의 악랄성은 우 선 이 제도가 폭력적인 방법에 기초하 여 유지, 운영되였다는것이다.

일제는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한 후 《통감통치》를 실시하면서 괴뢰정부를 위협, 공갈하여 인삼전매제를 실시하였으며 그후 그 폭을 넓혀나갔다. 일제는 《총독통치》에로 이행한 후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서 전면적인 전매제도의 실시에로 넘어갔다.

일제는 전매제도의 대상으로 규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저들만이 생산, 가공, 판매할수 있으며 식민지강권에 의거하여 그전부를 강탈할수 있다는것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전매품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농민들과 생산의전과정을 국가적수탈체계에 강제로 얽어매놓고 경찰권까지 발동하였다. 일제는 《담배경작조합》, 《삼업조합》, 《아편취체령》 등 각종 악법들과 어용기구들을 조작하고 거기에 생산업자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통제하였으며 전매

품생산지를 《법》적으로 고정시키였다. 특히 일제는 《전매령범칙규칙》이라는 《전매경찰법》을 조작하고 전매국이 위협공갈과 경찰권을 행사하여 전매품에 대한 략탈을 감행하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전매국의 관리들은 본질상 《전매경찰》이였으며 전매국직원들은 저들에게 부여된 강권을 발동하여 임의의 순간에 인민들의 집을 불법수색하였으며 마음대로 체포, 고문 지어는 살해까지 하였다.

일제는 1924년 2월 《전매령범칙규칙》에 관한 권한을 부윤, 군수 등 행정 관리들과 해당 지방주재의 세무관리들 에게도 주었으며 그후에는 도경찰부와 도 세관 관리들에게까지 부여하였다.

《전매령범칙》이란 본질에 있어서 일제의 전매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이였다.

일제는 이러한 전매령《위반자》들에 대하여 가혹한 형벌을 가했다. 1929년 한해동안에도 《전매령위반》으로 검거되여 재판에 회부된 인원수는 1만 5 504명이였으며 1925년~1930년기간에 《불법》으로 규정되여 부과된 벌금액은 34만원에 달하였다.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가한 폭행은 단 순한 취조나 벌금부과정도가 아니라 중 세기적인 고문과 학살까지 동반한것이 였으며 전매제도는 가장 악랄하고 폭압 적인 식민지략탈제도였다.

전매제도를 통한 착취의 악랄성은 또 한 그의 사기적방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제는 전매제품을 강탈하는데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등급규정을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생트집을 걸어 합격품도 《불합격품》으로 사정해버렸으며 그에 대한 한푼의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인삼납입의 경우 일제는 수확 1개월 전에 수확량과 뿌리수, 생육상태에 대한 이른바 《인삼수확사정》을 하였다. 여 기에서 일제는 제일 실하고 무게가 많 이 나가는 삼뿌리를 사정기준으로 정하 고 기계적으로 평균량을 제정하였으며 납 입량이 그에 도달하지 못하면 부족되는 량의 8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인삼수탈의 경우 만이 아니라 모든 전매품착취에 해당되 는 일반적인것이였다.

이처럼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조작실 시한 전매제도는 폭력적인 강제와 사기 협잡의 방법으로 일관된 식민지경제략 탈제도의 하나였다.

우리는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온갖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대를 두고 기어이 그에 대한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